

시 민

주무관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43
결재일자	201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 2013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전 문 가 : 유 ■ ( 유관기관 자문회의 ) 무 <input type="checkbox"/>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input type="checkbox"/>

# ● ● ● 차례 ● ● ●

<b>I. 추진배경</b>	<b>1</b>
<b>II. 현황 및 실태</b>	<b>2</b>
<b>III. 운영상 문제점</b>	<b>4</b>
<b>IV. 개선방향</b>	<b>5</b>
<b>V. 세부 추진계획</b>	<b>6</b>
(1)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6
(2) 경로당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8
(3) 경로당 운영제도 정비	10
(4) 경로당인센티브 및 시설·운영지원	11
<b>VI 행정사항</b>	<b>13</b>
○ 관련기관 역할분담	13
○ 사업홍보 방안 및 소요예산 집행계획	14
○ 향후추진일정	15

# 2013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단순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조직 운영체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지원체계 마련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I. 추진배경

### □ 경제성장, 의학기술 발달로 서울의 고령화 가속

- 서울시 어르신 인구 연평균 55천명, 6.5%씩 증가(2006년 78만명 → 2012년 110만명)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작으로 2019년에는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2012년 10% 내외)

### □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내 경로당 또한 지속 증가

- 경로당 수는 2012년 3,229개소로 2006년 2,872개소 대비 12.4% 증가(연평균 2% 수준)
  - 서울시 연도별 경로당현황 (단위:개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 소 (아파트)	2,951 (1,796)	3,002 (1,931)	3,079 (1,954)	3,116 (1,963)	3,173 (2,035)	3,229 (2,087)
전년대비 아파트증감(율)	-	135(7.5%)	23(1.2%)	9(0.5%)	72(3.7%)	52(2.6%)

-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아파트내 경로당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어르신 사랑방 기능만 수행

- 장기, 바둑으로 소일하거나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단순 취미교실 수준
-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폐쇄적인 상태임
- 어르신의 자율시설로 운영되면서 운영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 또한 미흡

⇒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경로당 기능 및 역할 확대, 운영비 등 관리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II. 현황 및 실태

### □ 경로당 현황('12.31일기준)

#### ○ 관리주체 · 형태 · 면적별 경로당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관리주체		형 태				면적별 현황(단위 : m <sup>2</sup> )					
	구립	사립	소계	단독	아파트	기타	소계	20m <sup>2</sup> 미만	20~49	50~99	100~299	300m <sup>2</sup> 이상
3,229	968	2,261	3,229	988	2,087	154	3,229	12	492	1,103	1,497	125

#### ○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경로당수	3,229	55	49	84	142	92	126	118	150	96	134	239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39	91	144	160	200	179	66	174	127	108	115	158	160	123

#### ○ 경로당연혁

- 1989년이전 : 마을단위 자생단체(사랑방 기능)
- 1989년 : 노인복지법개정(경로당을 노인여가시설로 규정)
- 1999년 : 노인정 회장 중심으로 대한노인회 창립
- 2000년~ : 경로당활성화사업 시작(노인복지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제공)

####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37조(노인여가시설 대상 규정 및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령 25조(설치신고), 47조(비용의 보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활동대상 및 비용보조)

#### ○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

- 65세이상 이용인원 20명이상, 거실(휴게실) 20m<sup>2</sup>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 구립경로당 : 자치단체, 사립경로당 : 시설장(회장)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현황**(’12년기준)

-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3,159개소
- 경로당어르신 프로그램 지원 : 1,015개
  - 주당프로그램 평균 3.3개, 노인복지관별 평균 8.6개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전담 사회복지사 및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 : 79명
- 경로당활성화사업 인센티브 제공 : 상·하반기 총 45개 경로당

□ **경로당 이용실태**

- 경로당 1개소 당 평균등록 회원수 : 40명

▶ 경로당 등록회원규모

구 분	등록회원수(명)			등록회원 규모 분포(%)					
	평균	최소	최대	20명미만	20~29	30~39	40~49	50명이상	계
전체	40	5	332	2.7	31.6	25.1	16.9	23.7	100.0
구립	49	9	332	1.4	13.3	20.4	23.6	41.3	100.0
시립	36	5	260	3.3	39.5	27.2	14.0	16.0	100.0

- 경로당 1일 평균 이용인원 : 23명

- 이용분포는 10~19명(31.6%)로 가장 높고 10명 미만도 2.7%로 나타남

▶ 경로당 1일 이용인원

구 분	1일 이용이원(명)			1일 이용인원 분포(%)					
	평균	최소	최대	10명미만	10~19	20~29	30~39	40명이상	계
전체	23	0	160	2.7	31.6	25.1	16.9	23.7	100.0
구립	29	6	126	1.5	13.3	20.3	23.6	41.3	100.0
시립	21	0	160	3.3	39.5	27.2	14.0	16.0	100.0

- 성별 이용자 수 : 여성어르신 67%, 남성어르신(33%)

- 연령대는 70대(50.5%), 80대(35.4%)로 대부분이고, 60대는 8.7%에 불과

-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47% 지원, 건강관련프로그램 53.9%

▶ 프로그램 실시현황

구 분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실시여부	실시	47.0%	프로그램 종류	건강체조	33.5
	미실시	53.0%		건강관리	20.4
프로그램수	1개	22.2		일상생활지원	12.6
	2개	9.6		노래교실	10.1
	3개	7.9		행사	6.6
	4개 이상	7.5		기타(오락, 미술, 평생교육, 댄스)	5.6

### Ⅲ. 운영상 문제점

---

####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 및 역할 미흡

- '89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편입된 이후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후기고령 어르신의 사랑방 기능에서 탈피하지 못함
- 고학력 신 노년층의 어르신 인구편입 등 여건변화에 대응 미흡

#### 신노년층 등 지역사회 교류 실적 및 개선의지 부족

- 주 이용계층인 70~80대를 위한 건강관련 프로그램(53.9%)에 치중
- 회비를 내는 회원만 이용자격을 부여, 경로당 공간을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극적

#### 회원, 조직, 예산 운영 및 관리·통제 시스템 부재

- 경로당 임원진이 프로그램운영과 시설개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명이 회장직을 장기간 맡으면서 경로당 사유화 및 폐쇄적 운영 폐단 발생
- 대부분 경로당이 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용 어르신이 고령으로 회계장부 작성 및 관리부실
-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외부 후원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물품제공이 특정지역 경로당에 집중(시설규모, 회원수, 반응고려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등 지원

#### 경로당 공급과잉, 이용인원 감소 대비 향후 시설 활용방안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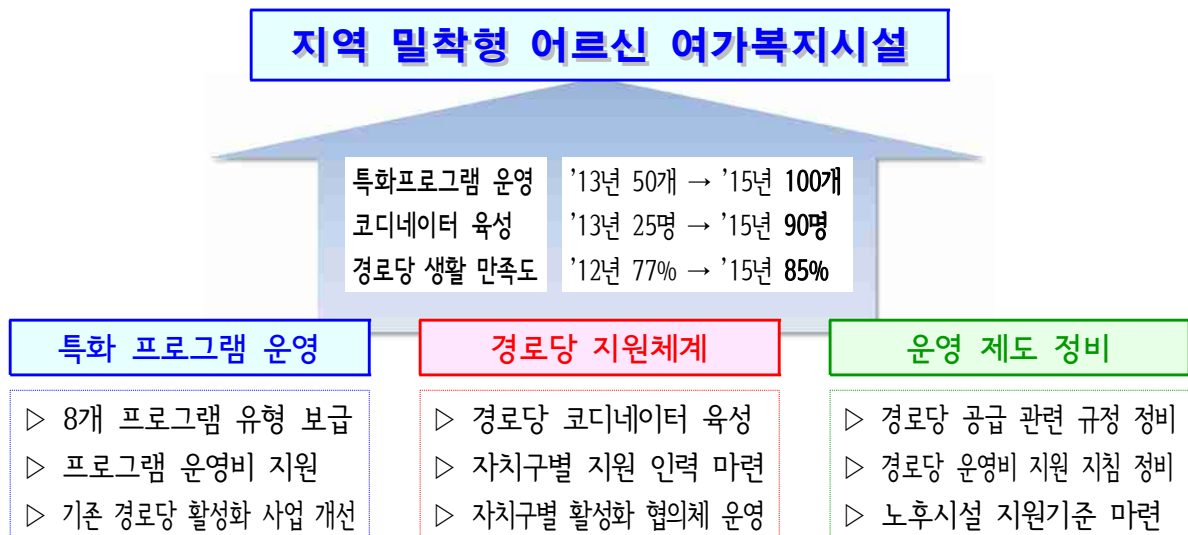
- 주 이용대상 75세 이상 어르신 기준 관내 424개 행정동 평균 경로당수는 7.5개소로 수요대비 공급 초과(회원20명 미만 경로당 2.7%)
- 66㎡ 미만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27.3%로 소규모 경로당 난립  
※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 설치규정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많은 서울시에 급격한 경로당 증가요인으로 작용

## IV. 개선방안

### □ 추진방향

- **경로당 어르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습형, 사회봉사형, 동아리형, 창작공방형, 공동작업장형, 도시농업형, 돌봄제공형, 시설개방형 등 8가지 표준 프로그램 유형 적용
  - 2013년부터 자치구별 1개소 이상 프로그램 시범 운영 후 연차별 확산
  -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주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개선
- **프로그램 등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활성화 사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할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 배치
  - 자치구 주도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간 전담 협의체 구성·운영
- **수요·공급 균형 유지 및 경로당 관리를 위한 경로당 운영 제도 정비**
  - 경로당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소규모 경로당 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
  - 규모·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체계 마련 등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지침 정비

### □ 추진체계





## V. 세부 추진계획

### 1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8개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안)

유형	프로그램 예시
학습형	·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 교실, 독서교실, 역사교실, 한지공예, 그림그리기, 노인생애교육, 남성노인 요리교육 등 노후생활 교육
사회봉사형	· 단순봉사형 : 동네청소, 교통정리, 지역사회 공동시설물 관리 · 전문봉사형 : 한자교실, 서예교실, 동화교실, 전기기술, 우산수리 등
동아리형	· 등산, 게이트볼, 배드민턴, 스포츠, 외국어, 역사공부 동아리 · 바둑/장기, 사진동아리, 사물놀이 등 취미활동 동아리
창작공방형	· 조각보 만들기, 뜨개질, 한지공예 등
공동작업장	· 하청작업형 : 종이봉투, 양말포장, 채소다듬기 등 · 생산판매형 : 밀반찬, 제과제빵, 전통식품(떡, 식혜 등), 창작공방 생상품
도시농업형	· 옥외 텃밭가꾸기, 옥상정원, 수경재배, 실내 재배 등 · 동네 골목에 화분/상자 이용 마을 조경사업
돌봄제공형	· 조부모 공동육아,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일시돌봄 · 독거노인 돌봄 (우애방문, 전화하기 등)
시설개방형	· 청소년 공부방으로 개방, 일부 공간을 소규모 지역도서관으로 활용 · 주민조직 회의실 등으로 공간 활용

##### ○ 추진방법

- 자치구 단위 사업공모 또는 지정을 통하여 구별 2개소 이상 선정
- 경로당 참여 확대를 위해 시범 경로당 대상 사업비 지원

##### ○ 소요예산 : 7억

- 전담인력 인건비 4억5천(1개 구당 월150만원), 사업비 2억5천(구별 1,000만원)

#####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 연차별 추진계획(안)

단 위 사 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로당활성화 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	50개소	75개소	100개소

##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개선

### ○ 추진(실적)실태

(‘12.상반기 기준)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수	노인복지관 자체운영 프로그램 종류								주당프로그램 제공 총 횟수
	소계	여가	건강 지원	교양	직업 훈련	정서 지원	생활 지원	기타	
1,015	819	265	167	71	6	74	87	149	2,454

- 프로그램 제공 경로당수 증가 : '11년 918개소 → '12년 상반기 1,015개소(10.6% ↑)
- 주당 프로그램 평균 제공횟수 증가 : '11년 1.6회 → '12년 상반기 2.4회(50% ↑)
- 제공 프로그램 종류 감소 : '11년 906개 → '12년 상반기 819개(9.6% ↓)
- ※ 대부분 프로그램이 건강, 여가, 생활지원등 취미활동 수준에 머무름

### ○ 문 제 점

-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미흡
- 양적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동일·유사 프로그램 공급 과잉 우려
- 경로당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지 부족
- 일정규모 미만(100㎡ 미만) 경로당은 프로그램 지원대상에서 소외(사각지대)

### ○ 개선방안

- 기존 경로당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 보급(미실시 경로당 53%)
- 1.3세대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합동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유도
  - ▷ 동아리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어르신중심의 주체적 프로그램 발굴(개발) 공급
- 경로당 임원진, 대한노인회실무직원 리더쉽교육을 통한 사업추진동기부여
- 각 경로당별 선호도가 높은 공통 프로그램(노래교실 등)에 대해 지역단위 경연대회 개최(아마추어 실버합창단, 건강체조 시범 등)등 동기부여 방안강구
- 프로그램 미실시 소규모 경로당(53%)의 인근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 소규모 경로당(100㎡ 미만)은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회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적극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검토

### ○ 추진기간 : 2013. 1월~ 12월

**□ 경로당 코디네이터 등 지원인력 육성****○ 노인종합복지관내 경로당 코디네이터 육성**

- 역할 : 지역경로당 현황 및 실태, 어르신욕구 분석,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추진방법 : 복지관별 신노년층 리더를 발굴, 전문인력으로 육성
- 확대방안 : ‘13년 총25명을 육성 현장배치하고 운영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관내 전 노인종합복지관(30개소)으로 확대 실시

**○ 대한노인회 특화프로그램 전담지원 인력 배치**

- 역할 : 경로당 사업개발, 시행 등 총괄관리
- 추진규모 : 25명(서울시 25개 지회 각1명)
  - ▷ 복지분야 전문가 및 행정실무 경력자 우대선발 배치(대한노인회)
- 추진방법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각 지회별 전담지원 인력현황(프로필) 및 사업계획서 제출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역할 강화**

- 내용 : 경로당 실태파악, 노인들의 욕구분석 및 서비스계획 등 필수 업무 지정 및 계획·실적 보고(자치구) 확행
- 추진방법 : 순회프로그램관리자에게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대한 고유업무 부여(대한노인회 협조)
- 업무지정(안)
  - ▷ 경로당특화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모니터링, 공동작업장일감제공, 지역사회참여연계 등 어르신들의 욕구분석 및 서비스 지원
  - ▷ 경로당 만족도 조사(기존 연 1회 ⇒ 상·하반기 각1회)
  - ※ 경로당학술용역(‘12년, 서울연구원) 설문항목 참조
  - ▷ 경로당 어르신 회원 및 시설관리 통계조사 전담(매분기 1회 통계자료 제출)

□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구성**

- 구 성 : 자치구, 노인회지회 등 관계전문가 5~10명
- 운 영 : 매분기 1회
- 역 할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각 개별기관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 조정
  - 경로당활성화 사업실태조사,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조정 등 사전 협의, 시설인력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역할분담
  - 지역형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 그 밖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지원기준 : 복지건강실 배분기준에 따름
- 추진방법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포함(서면평가)
- 추진시기 : 2013. 9월~10월
-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경로당 활성화사업	<b>계</b>			<b>5</b>	
	신규 사업	특화프로그램 운영	○ 참여경로당수 - 3개소 이상 : 1등급 - 2개소 : 2등급 - 1개소 : 3등급 ○ 특화프로그램 적용 - 3개 이상 : 1등급 - 2~3개 : 2등급 - 1개 : 3등급	- 참여경로당수(1점) • 1등급 : 1 • 2등급 : 0.75 • 3등급 : 0.5 - 적용프로그램수(1점) • 1등급 : 1 • 2등급 : 0.75 • 3등급 : 0.5	2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협의체구성·운영 - 회의개최 4회이상 : 1등급 - 회의개최 3회 : 2등급 - 회의개최 2회 : 3등급 - 회의개최 1회 : 4등급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1점) • 1등급 : 1 • 2등급 : 0.85 • 3등급 : 0.7 • 4등급 : 0.5	1
	기존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수	○ 41개 이상 : 1등급 ○ 36~40 : 2등급 ○ 30~35 : 3등급	- 프로그램지원실적(2점) • 1등급 : 2 • 2등급 : 1.5 • 3등급 : 1.0	2

### 3

## 경로당 운영제도 정비

### □ 경로당설치 제도 정비방안

#### ○ 소규모 경로당 난립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설치기준 강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복리시설 유형에서 경로당 제외)
- 비활성화, 사유화된 경로당 운영비 지원제한
- 소규모 노후 경로당 통폐합 및 폐쇄 근거 마련

#### ○ 노후 구립 경로당 기능전환(2013년 이후 지속)

- 소규모 노후 구립 경로당은 통폐합 하는 한편, 재개발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노인복지시설로 기능 전환 지원

▷ 노후 구립 경로당부터 점진적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기능전환

※ 소규모복지센터 건립현황

총 계	기 지원(47개소)			지원 계획(23개소)				
	소 계	건립완료 (33)	건립 중 (14)	소 계	13년	14년	15년	16년
70개소								
시 지원	24	14	10	23	4	6	6	7
자치구 자체건립	23	19	4	0	-	-	-	-

#### ○ 경로당 건립 기준 관련 조례제정 검토

-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면적이상으로 제한
- 경로당간 적정한 거리기준 제시(일정거리 범위내 중복설치 제한)

##### ▶ 법령·제도 개선(안)

- 경로당 최소면적 ( $20m^2 \rightarrow 54m^2$ ), 경로당 최소 등록인원(20명  $\rightarrow$  40명)
- 경로당간 거리기준 반경 500m(어르신보행속도로10분거리, 3km/h)
- 공동주택단지 경로당 설치기준 강화(100세대에서 상향조성 또는 경로당 의무적 건립 기준완화 조항 신설)

## □ 경로당 운영비 · 난방비 등 지원지침 정비

### ○ 지원실태

- 1992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 자치단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 ▷ 운영비 월 300천원, 난방비 연603천원(국비지원 특별난방비 연1,500천원)
- 2012년 경로당난방비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규정(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자치구비 별도 지원은 가능)
  - ▷ 자치구별 경로당 공동주택 지원현황('12.10월 기준)

구 분	해당자치구	비 고
전체지원(2)	중구, 영등포구	
일부지원(15)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자체기준에 임대아파트 등 영세한곳 일부지원
미 지원(8)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마포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3개미만 구

### ○ 문 제 점

- 운영비 지원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등 목적외 사용(회식, 부식비)
- 정부보조금은 공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냉·난방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경로당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경로당에서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고, 회계장부 정리가 미흡함

### ○ 개선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등 지원에 관한 관리기준 통보
  - ▷ 경로당 운영·난방비 차등지원 자체 기준안 마련 (각 자치구)
    - ※ 시설규모, 회원수, 이용실적(일) 등 기준 항목 제시(실무협의회 의견수렴 후 통보)
  - ▷ 운영비는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제한

'13년 공동주택경로당 난방비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혹한, 관리주체 준비 기간 등 고려)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계도 등 행정지도

-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에 따른 표준에너지 권장 사용지침(안) 검토
  - ※ 보건복지부에 경로당 표준에너지 사용지침 시달 건의
  - ▷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한 전기료나 도시가스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 에너지 사용량 또는 표준사용량을 지침시달 보건복지부 건의
- 회계처리 어르신(총무)의 주기적인 교육 및 지도(순회프로그램 관리자)

## □ 노후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

### ○ 지원기준(안)

- 노후 경로당중 경로당활성화사업관련 “주민참여 예산심의 위원회”심의 통과사업에 대하여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연계, 지원여부 검토

#### <경로당관련사업 사업검토 기준>

- ① 경로당 활성화사업관련 경로당 제도개선(안)과 부합여부 검토
  - 프로그램시행 가능 최소면적 54㎡, 시설개방요건 충족, 시설개방(조건)
- ②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낮은 자치구 우선지원
  - ※ 구립 노후경로당 소규모복지센터로 전환(연면적 500㎡ 이상)시 시비지원(1개소 10억)

### ○ 2013년 추진계획

#### - 지원대상

사업명(자치구)	소재지(현황)	사업규모(내용)	시설내역	소요예산
내촌경로당 재건축사업 (강서구)	강서구 개화동 551-34 외 4필지	지상2층 지하1층 (대지면적 265㎡, 건축면적 132.1㎡, 연면적 264.2㎡)	할아버지할머니방,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	449,000천원
어르신들모임터 (강북구)	관내 경로당 96개소	경로당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기존시설 보수 재할용	235,000천원

### ○ 추진일정

- 2013. 1~2월 : 각 자치구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확인
- 서울시 사업과 연계방안 강구(시설개방, 특화프로그램 운영 검토 및 추진요청)
- 2013. 3~12 : 추진일정에 따라 공사추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013.12월 : 준공보고 및 최종 정산서 제출

### ○ 지원방법

- 해당 자치구에 지원기준(안) 통보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여부 확인
- 세부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의거 공정별 사업비 지원
  - ※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부담

## VI. 행정사항

### □ 관련기관(부서) 역할 분담(협조사항)

#### ○ 역할분담 내역

구 분	내 용	시기	협조기관 (부 서)
어르신복지과	-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 실무회의 개최 (2월중) - 각 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 -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1월 2월 " 3월	보건복지부 자치구,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복지정책과	- 경로당활성화사업 자치구 인센티브평가에 포함 - 서울어르신 경로당활성화 홍보지원	연중	언론 및 방송매체 (신문, 교통방송 등)
25개 자치구	- 특화프로그램공모 또는 지정 시행(2개 이상) - 경로당활성화 지역협의체 구성 - 지역자원과 경로당 연계 지원(창작공방 등) - 경로당활성화 실적관리 및 보고 ※ 경로당활성화 전담인력 지정	2월 " 연중 매분기 1월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 소규모(100㎡미만)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 공동작업장 일감연계(희망경로당 4개소)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지정 및 관리 (만족도, 회원시설관리,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연계)	3월  2월 연중 "	각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노인종합 복지관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지원(자치구와 협의) - 기존 프로그램사업 지속(시니어전문강사 등) - 신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지원 (쌍방향 교육프로그램개발 ; 사례발표, 역할연기 등) ※ 코디네이터 경로당 파견시 실비지원	2월 1월 3월  파견시	각 자치구 대한노인회 지회 인생이모작센터
인생이모작 센터	- 신노년층 코디네이터 육성과정 신설 및 지원 (과목신설, 교육장확보, 과정수료증 등)	3월	노인종합복지관



## □ 사업 홍보방안

### ○ 언론·미디어 홍보

- 신문사 일간지 홍보(서울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및 협조요청)
- 지역케이블(C&M, T-브로드), 교통방송, 서울시 인터넷 TV 현장중계
- 시청종합정보지(서울사랑) 기획사 및 자치구 소식지 2월호 게재
- 자치구 반상회보 및 아파트 공익광고

### ○ 온라인 홍보

- 서울시 및 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 □ 소요예산 집행계획

### ○ 소요예산

- 경로당활성화 사업비 : 2,697,275천원
  - ▷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 1997,275천원
  - ▷ 대한노인회 자치구 지회 경로당 지원 인력 인건비 : 450,000천원
  -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 250,000천원
  - ▷ 경로당활성화 코디네이터육성 : 29,000천원
- 경로당 주민참여예산 지원 : 684,000천원
  - ▷ 내촌경로당 : 449,000천원
  - ▷ 어르신들 모임터 개보수 : 235,000천원

### ○ 사업별 집행방안

- 인건비,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비 분기 교부 및 정산
  - ▷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구분하여 집행
  - ※ '12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각 단위사업은 사업계획제출 및 교부신청에 의거 자치구로 교부
- 주민참여 사업은 사업방식 및 추진공정에 따라 예산 교부

## □ 향후 추진일정

- 2013. 1월 : 경로당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어르신복지과)
- 2013. 2월 : 각 단위사업별 실태조사 및 준비(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 2013. 3월~12월 : 사업시행 및 사업비 교부
- 2013. 9월 : 각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제출(각 자치구)
- 2013.10월 : 25개 자치구 경로당활성화사업 인센티브 평가
- 2013.11월 : '13년 말 사업추진 최종실적 제출(자치구)
- 2013.12월 : 사업추진설적성과 및 문제점 분석 개선대책 마련

- 붙임 : 1.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사례 1부  
2.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관리지침 1부  
3. '13년 경로당운영·특별난방비 및 활성화사업비 소요액 1부

##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사례

### □ 사회봉사 활동(마포구 공덕동 연봉경로당)

- 추진배경 :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참여유도
- 활동분야 : 지역사회 봉사 동아리 활동
- 내 용 : 지역사회 환경미화 봉사활동
- 시 행 : 매주 토요일 오전 7시~8시  
마을 청소
- 사업효과 : 회원 간의 친목과 협동심이  
증가 및 삶의 활력도 증가



### □ 전통문화 교육(양천노인종합복지관- 전통문화전승단)

- 추진배경 :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출발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
- 활동분야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 내 용 : 복지관에서 전통문화 교육을 이수하고 어린이집을 방문  
전통문화 교육
- 방 법 : 3명1조, 어린이집방문 15~30분간 교육
- 사업효과 : 예절교육 등을 통한 세대 간 소통 및 어르신 역할에  
대한 자긍심 고취

### □ 동아리 활동(홍제 한양아파트 경로당 등산 동아리)

- 추진배경 : 취향이 비슷한 어르신들을 하나로 묶어 동아리 결성
- 활동분야 : 등산 동아리 활동
- 내 용 : 매주 동아리 회원 11명이 월1회 등산 및 기록유지
- 사업효과 : 건강 및 회원 간 친목도모



□ 공동작업장(강북구 수유동 한신경로당)

- 추진배경 : 대한노인회지회 권유 수익사업
- 활동분야 : 공동작업장(별도작업장 확보)
- 내 용 : 종이봉투 양말포장
- 시 행 : 매일 종이봉투 만들기 8명,  
양말포장 4명 참여(월3~8만원)
- 사업효과 : 수익사업을 통해 생활비 보탬  
손자 용돈 등 삶에 활력



□ 도시농업(성북구 정릉동 산일경로당)

- 추진배경 : 생산적 활동추진(회장제안)
- 활동분야 : 도시농업
- 내 용 : 상추, 고추 등 식용작물 재배(계절별)
- 사업효과 : 화투, 음주 등 폐쇄적 운영 에서 탈피, 회원 간 친목  
증진 및 환경개선



□ 도시농업(관악구 신사동 신사경로당)

- 추진배경 : 구청차원에서 경로당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활동분야 : 도시농업
- 내 용 : 상추수경재배
- 시 행 : 자치구 지원으로 수경재배 시작(2012년 8월)
- 사업효과 : 수경재배를 통해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판매수익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관리지침

### (1)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기준

#### □ 운영비 집행 기준

- 공공요금(전기, 전화, 상하수도료 등), 연료비, 소모품비 등 필수경비에 우선 사용
- 잔액이 있을 경우 경로당 회원을 위한 공동 경비로 사용
- 운영비 등 집행내역 분기별 공개 의무(미공개시 운영비 지원중단 검토)

#### □ 난방비 집행 기준

- 난방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잔액발생시 전액 반납)
- 공동주택 경로당은 관리주체(아파트자치위원회, 관리사무소 등)가 난방비 비용부담(단 '13년 상반기까지는 '12년도와 동일하게 기 지원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지원)
  - ※ 최근 혹한과 공동주택 경로당 관리주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 '12년 공동주택경로당 중 자치단체 비용지원에서 관리주체비용 부담으로 확정된 시설 제외
- 국비 경로당특별난방비 교부 시 일반난방비에 우선하여 집행(보조금 집행기준 및 매칭준수)

#### □ 체크카드 사용 방법

- 운영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사용
  - ※ 예외 : 공공요금, 소액지출(소액의 범위 등은 자치구 자체기준 마련)
- 사용전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
  - 체크카드 발급대장 작성 및 사용 전 사용부에 목적과 내용 기재
-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하며 반납과 동시에 사용대장에 사용금액 기재

※ 체크카드사용부(별지5호서식) 작성 시 지출결의서(별지2호 서식) 생략 가능

- 매출전표(영수증)서명란에 경로당 명칭과 사용자 서명 기재 후 체크카드 사용부에 첨부 보관

○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허위사행 기재 및 사적인 용도 사용 금지

※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체크카드 사용기준 및 정산 간소화 방안 마련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운영보조금 신청은 붙임 서식에 의거 매분기 5일전 까지 제출**

○ 전 분기 정산 및 교부신청에 의거 운영보조금 지원(신규 시설 포함)

**□ 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 '13 신규 설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관리통장 단체명의 발급 의무화

○ 경로당 운영비 체크카드 발급 사용 실태 1/4분기 정산보고서 보고

○ 난방비 집행 투명성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일괄 집행 추진방안 검토

○ 운영비 불법사용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반기 1회)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 강화(자치구, 년 2회 이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미담사례 발굴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 인터뷰 요청시 대상자 연계

**□ 공동주택아파트 경로당난방비 관리주체 비용부담 계도실적 제출**

○ 계도실적 제출 : 2013. 1/4분기 정산보고 시 제출

자치구명	연번	공동주택경로당 (기 수혜시설)	안내문 전달 및 계도내용	수용여부	비 고
○○구	1			수용, 보류, 거부	관리주체비용 부담시설대상
	:				

※ 지원중단 시설관리주체에 2012년 안내문(어르신복지과-4563: '12.11.27)을 참고하여 자체 안내문을 작성 계도하고 그 실적을 상기 제출양식에 작성 제출

붙임 : 경로당 운영 관련 각종 서식 3부

(붙임 1)

## 2013년도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교부신청서

수 신 서울특별시(노인복지과장)

발 신 ○○○구청장(○○○과장)

제 목 2013년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신청

2013년 /4분기 우리구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지원대상	교부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 나. /4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개소)

구 분	대상	지원단가	신청액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 신규 개설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 다. /4분기 신규 개설 경로당현황

(단위 : 천원, 개소)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비 고
대상	신청액	대상	신청액	

붙 임 : 신규 개설 경로당 신고·처리 현황 1부. 끝.

2013. . .

구 청 장(인)

(붙임 2)

# 2013년도 /4분기 경로당 신고 · 처리현황

( 〇〇〇구 )

시설명	소재지	신 고 처리일	면적 (㎡)	시설장 (회장)	전화	등록 인원 (명)	1일 이용 인원 (명)	운영 주체 (구립, 사립)	유형 (아파트, 단독, 기타)	난방 (중앙, 지역)



## 경로당 설치·운영기준(안)

### I. 경로당 설치 및 운영기준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제36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별표7>

나. 설치기준 및 신고방법

○ 시설규모 : 65세 이상 이용정원 20인 이상

○ 시설기준

- 설비시설 :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 설비기준 :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이상

○ 대상시설 건물형태 및 소유기준

- 건물형태

·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된 건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함.

- 건물소유 구분

·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장기 사용토록 사용 승낙서가 첨부된 시설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다. 운영기준

○ 운영규정

- 회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증명서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교육일지)
- 이용노인(회원)명부
-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 ○ 사업의 실시

경로당 회장은 이용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

- 시 또는 구 사업 :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교통, 방범, 환경, 청소년선도 등)
- 자체사업 : 자연보호, 내집앞 쓸기, 어려운 이웃 돌보기 등

## II. 임원선출 및 구성

### 가. 선 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1인에 한하고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경로당 자율적으로 선출 구성

### 나. 자 격

임원은 반드시 65세 이상 관내(관할동)거주 회원 중에서 선출 하여야 하고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임원 중 총무는 제외)

※ 개인이 설립한 사립경로당은 예외

다. 임 기 :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라. 구에서 할 일

변동사항 처리 ⇒ 신고필증 이면에 대표자 변동사항 기재 재교부

### Ⅲ. 수입금 집행 및 정산

가. 수입

#### ○ 수입 종류

- 보조금 수입 : 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계좌로 입금되는 수입  
(운영비, 난방비 등)
- 기타 수입
  - 회비수입 : 회원들의 회비수입
  - 사업수입 : 공동작업장 등에서 얻는 수입
  - 후원금 수입 : 독지가나 부녀회 등에서 받는 기부금, 찬조금 등 수입
  - 잡수입 : 이자수입 등

나. 지출

#### ○ 지출의 종류

- 보조금(운영비, 난방비)지출 :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수입 지출

#### ○ 지출의 방법

- 금전출납부를 보조금 금전출납부, 기타수입 금전출납부로 2권 작성하여  
(별지 3호서식)
- 보조금에 따른 수입·지출은 단체명의를 별도통장으로 관리하며 보조금 금  
전출납부에만 정리하여 지출
- 기타수입에 따른 수입·지출은 기타수입 금전출납부에만 정리 지출
- ※ 다만, 경로당 회장은 총무 등이 회계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수입 금전출납부와  
기타수입 금전출납부를 1권으로 통합 작성하여 할 수 있음

#### ○ 체크카드 사용 방법

- 운영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사용
- ※ 예외 : 공공요금, 소액지출(소액의 범위 등은 자치구 자체기준 마련)
- 사용전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
  - 체크카드 발급대장 작성(별지4호 서식) 및 사용전 사용부(별지5호서식)에 목적과 내용 기재
-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하며 반납과 동시에 사용대장에 사용금액 기재
  - ※ 체크카드사용부(별지5호서식) 작성 시 지출결의서(별지2호 서식) 생략 가능
  - 매출전표(영수증)서명란에 경로당 명칭과 사용자 서명 기재 후 체크카드 사용부에 첨부 보관
-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허위사항 기재 및 사적인 용도 사용 금지
- ※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체크카드 사용기준 및 정산 간소화 방안 마련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다. 정산

- 보조금(운영비·난방비)은 정산서(별지1호 서식)를 구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지출결의서(별지2호 서식)는 경로당에 보관한다.

- 붙임 1.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금전출납부 1부.  
 4. 체크카드발급대장 1부.  
 5. 체크카드 사용부 1부. 끝.

(별지1호서식)

## 2013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경로당명 : (전화번호)

정산내역

구 분	이 월 액 (가)	수 령 액 (나)	지 출 액 (다)	잔 액 (라)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 (가 + 나 - 다) = 라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합니다.

2013년 월 일

○○ 경로당 회장 (인)

(동장)구청장 귀하

(별지2호서식)

## 지출결의서

	총 무	부 회 장	회 장
지출일자			
지출액 지출내용			
(지출증빙자료첨부)			

(별지3호서식)

보조금수입  
기 타 수입

# 금전 출납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별지4호서식)

## 체크카드 발급대장

발급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결재			
		기관명	계좌번호			계	총무	부회장	회장

(별지5호서식)

## 체크카드 사용부

사용일시	사용자		사용내역	결재			
	성명	사용금액		계	총무	부회장	회장



〈붙임3〉

## 2013년 경로당운영 · 특별난방비 및 활성화사업비 소요액

경로당운영비 및 특별난방비

(단위 : 천원)

구분	지방비 분담비율		국·시비 누계	연간 예상소요액						
	시비	구비		운영비(월300천원)		특별난방비(연150천원)				
				개소	시비	개소	계	국비	시비	구비
<b>총 계</b>			<b>8,436,360</b>	3,229	6,843,600	1,596	2,394,000	478,800	1,113,960	801,240
종로구	50%	50%	137,700	55	99,000	44	64,500	12,900	25,800	25,800
중 구	30%	70%	85,260	49	52,920	45	73,500	14,700	17,640	41,160
용산구	50%	50%	211,500	84	151,200	68	100,500	20,100	40,200	40,200
성동구	60%	40%	378,120	142	306,720	70	105,000	21,000	50,400	33,600
광진구	60%	40%	239,520	92	198,720	40	60,000	12,000	28,800	19,200
동대문구	60%	40%	400,680	126	272,160	121	189,000	37,800	90,720	60,480
종랑구	70%	40%	344,100	118	297,360	42	61,500	12,300	34,440	14,760
성북구	70%	40%	417,900	150	378,000	40	52,500	10,500	29,400	12,600
강북구	70%	40%	335,400	96	241,920	96	123,000	24,600	68,880	29,520
도봉구	70%	40%	379,860	134	337,680	37	55,500	11,100	31,080	13,320
노원구	70%	30%	647,880	239	602,280	20	60,000	12,000	33,600	14,400
은평구	60%	40%	340,020	139	300,240	55	58,500	11,700	28,080	18,720
서대문구	60%	40%	247,560	91	196,560	79	75,000	15,000	36,000	24,000
마포구	60%	40%	368,160	144	311,040	57	84,000	16,800	40,320	26,880
양천구	60%	40%	418,020	160	345,600	71	106,500	21,300	51,120	34,080
강서구	60%	40%	497,280	200	432,000	62	96,000	19,200	46,080	30,720
구로구	60%	40%	539,640	179	386,640	150	225,000	45,000	108,000	72,000
금천구	60%	40%	203,760	66	142,560	57	90,000	18,000	43,200	28,800
영등포구	50%	50%	369,000	174	313,200	110	93,000	18,600	37,200	37,200
동작구	60%	40%	394,680	127	274,320	112	177,000	35,400	84,960	56,640
관악구	70%	40%	375,900	108	272,160	108	136,500	27,300	76,440	32,760
서초구	50%	70%	243,000	115	207,000	41	60,000	12,000	24,000	24,000
강남구	30%	70%	215,520	158	170,640	68	102,000	20,400	24,480	57,120
송파구	50%	50%	338,400	160	288,000	53	84,000	16,800	33,600	33,600
강동구	60%	40%	307,500	123	265,680	62	61,500	12,300	29,520	19,680

※ 경로당난방비는 특별난방비(국·시·구) 동절기 1개 소당 연 150만원기준 지원

## □ 경로당활성화사업 인건비

(단위 : 천원)

시설명	총계	인건비 분기별 소요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521,247	380,311.62	380,311.88	380,311.62	380,311.88
종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중 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용산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성동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광진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동대문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종랑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성북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북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도봉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노원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은평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서대문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마포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양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구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금천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영등포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동작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관악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서초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남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송파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강동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송파구	58,509.5	14,627.37	14,627.38	14,627.38	14,627.37

□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비

(단위 : 천원)

시설명	총계	프로그램비 분기별 소요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4,6000	111,150	111,150	111,150	111,150
종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중 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용산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성동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광진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동대문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종랑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성북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북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도봉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노원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은평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서대문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마포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양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구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금천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영등포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동작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관악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서초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남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송파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강동구	17,100	4,275	4,275	4,275	4,275
송파구	17,100	4,275	4,275	4,275	4,275